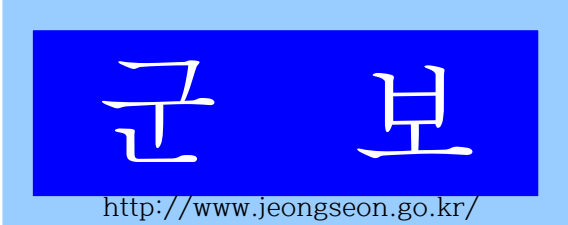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58호 2024. 4. 17.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4-23호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수질오염방지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4-409호다목적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3
- 정선군 공고 제2024-423호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변경).....7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4-13호 정선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0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4-14호 정선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5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4-23호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수질오염방지지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1. 정선군 고시 제2010-96호(2010. 7. 9.)로 최초 결정되어 정선군 고시 제2024-1호(2024. 1. 5.)로 변경 고시된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지설)에 대하여,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97조·제99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5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수질오염방지지설)
- 2) 명 칭 : 고한(삼탄)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지설) 설치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위 치	규 모	기시행	금회시행	
환경기초시설 (삼탄수질정화시설)	수질오염 방지지설	고한읍 고한리 3-1번지 일원	A=20,933㎡	19,703㎡ (사업외구역 1,325㎡)	A=8,445㎡ (기시행 중복 7,215㎡, 신규 1,230㎡)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황규연
- 2)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7. 6.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 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고한읍 고한리	3-1	대	5,677	2,061	원주시 혁신로 199	한국광해 광업공단	
2	고한읍 고한리	5	대	621	621	원주시 혁신로 199	한국광해 광업공단	
3	고한읍 고한리	21	잡	6,268	6,196	원주시 혁신로 199	한국광해 광업공단	
4	고한읍 고한리	274-4	천	13,132	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환경부)	
5	고한읍 고한리	산1-160	임	3,059,675	11,53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국(산림청)	
6	고한읍 고한리	산216-1	임	6,936,478	414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410	대한불교조계종 제4 교구말사정암사	
계				10,021,851	20,933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4-409호

다목적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다목적용(스마트 주차정보 공유서비스, 방범, 쓰레기 불법투기 등)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4년 4월 3일

정 선 군 수

1. 공고기간 : 2024년 04월 03일 ~ 04월 22일 (20일간)

2. 사업개요

○ 설치목적

- CCTV 설치를 통하여 주차장 주차정보 서비스 및 범죄예방, 사건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로 군민이 편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 사업예정기간 : 2024년 5월 ~ 2024년 9월

○ 설치·운영 :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 설 치 위 치

No	위치	촬영시간
소계	17개소	
1	정선읍 봉양리 33-10 일원	24시간
2	정선읍 봉양리 361-2 일원	24시간
3	정선읍 봉양리 392-6	24시간
4	정선읍 봉양리 390-10 일원	24시간
5	정선읍 봉양리 399-1 일원	24시간
6	정선읍 봉양리 357-20 일원	24시간
7	정선읍 봉양리 144-5	24시간
8	정선읍 봉양리 138-3 일원	24시간
9	정선읍 봉양리 385-4 일원	24시간
10	정선읍 봉양리 115-1 일원	24시간
11	정선읍 봉양리 255-2 일원	24시간
12	정선읍 봉양리 253-1	24시간
13	정선읍 봉양리 215-1	24시간
14	정선읍 봉양리 259	24시간
15	정선읍 봉양리 211-2 일원	24시간
16	정선읍 봉양리 211-1 일원	24시간
17	정선읍 봉양리 54-7	24시간

○ 군청 홈페이지 : <https://www.jeongseon.go.kr>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처 :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2613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팩스 : 033)560-2911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총무행정관(☎560-29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다목적용 CCTV 설치」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행정예고(안)	수정제출(안)	사 유

다목적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24-423호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변경)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에 따른 상황관측 및 현장 모니터링 등을 위한 CCTV 설치에 앞서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9일

정 선 군 수

- 1. 행정예고 내용 :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CCTV 설치
- 2. 행정예고 기간 : 2024. 4. 9.(화) ~ 2024. 4. 29.(월) (20일간)
- 3. 공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s://www.jeongseon.go.kr/>) 및 게시판
- 4. 설치 장소 및 개수 : 7개소

연번	위 치(설치장소)		설치개수	비고
	당 초	변 경		
1	정선읍 봉양리 266-1	정선읍 봉양리 266-1	2개	도로차단시설
2	정선읍 북실리 775-6	정선읍 북실리 775-6	1개	"
3	정선읍 덕송리 414-14	-	-	-
4	정선읍 덕송리 산134-3	정선읍 덕송리 산134-3	2개	도로차단시설
5	-	정선읍 덕송리 77-2	2개	"

5. 의견제출

○ 이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붙임1】 의견서를 2024. 4. 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침수도로 차단시설 CCTV 설치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6. 문의 및 의견제출처: 정선군청 건설과 토목팀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TEL: 033-560-2007, FAX: 033-560-2099, e-mail: gaga2237@korea.kr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행정예고(안)		수정제출(안)		사 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4-13호

정선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정선군의회의회장

1.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입은 군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정지원 등 (안 제4조)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보조금 지원
- 홍보 및 교육 (안 제5조)
 -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노력
- 비밀준수 (안 제6조)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의 의무
- 관계기관의 협조 (안 제7조)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에게 협조 요청

3. 예고기간 : 2024. 4. 11 ~ 4. 16.(초일불산입 / 5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177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sbonnie@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정선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 6.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4-14호

정선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정선군의회의회장

1. 제안이유

- 기후위기 발생으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정선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정선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로 변경
- 정의(안 제2조)
 - 폭염특보의 발표기준을 기온에서 체감온도로 변경한 「예보업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
-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안 제4조~ 안 제6조)
 - 폭염 뿐만 아니라 한파에 대해서도 피해 대응 종합대책 수립, 예방사업, 취약계층 지원

3. 예고기간 : 2024. 4. 11 ~ 4. 16.(초일불산입 / 5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177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sbonnie@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의회 조례 제 호

정선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피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정선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예보업무규정」 제17조 및 별표 6 특보의 발표기준에 따른 폭염을 말한다.
2. “한파”란 「예보업무규정」 제17조 및 별표 6 특보의 발표기준에 따른 한파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 “안전취약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옥외작업 노동자 등을 말한다.
4. “폭염·한파 저감시설”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폭염·한파로부터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정선군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5.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폭염·한파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사업) 군수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지원 사업
- 2.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
- 3.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
- 4. 기상청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문자 발송 등 홍보사업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제7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 2. 냉난방 물품 지원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리·반장
- 2. 건강보건 전문인력
-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재난도우미의 지정·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한파대책

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 ③ (생략)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

- 3.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 4. 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 5.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 ③ (생략)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의2(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 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 3.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가축·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 4.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5. 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의3(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한파피해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 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한파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 3. 한파로 인한 농작물·가축·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 4.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5. 한파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보업무규정」

제17조(특보기준) 영 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육상 및 해상의 특보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예상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개정 2018. 6. 1., 2020. 7. 30., 2023. 5. 11.>

특보의 발표기준(제17조 관련)

종류	주 의 보	경 보
강풍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0km/h(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건조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표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표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표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표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한파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 ₁₀) 농도 800 μ g/m ³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